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www.foodsafetykorea.go.kr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

CONTENTS

01 위생교육 4

02 영업신고 5

03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8

04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 신청 15

05 수입신고서 작성 22
5-1 공통사항
5-2 품목사항
5-3 첨부파일

붙임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 37

01 CHAPTER

위생교육

1. 신규 4시간 위생교육 수료 후 **위생교육수료증을 영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대상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❶ 위생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위생교육일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위생용품안전관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❷ 교육기관

저장번호	기관명(집합교육장)	누리집 및 연락처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2호	한국식품정보원 (서울교육장/ 대전교육장)	(누리집) https://foodi.com 042-820-9000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집합교육, 온라인교육(Zoom)
제4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과천본원)	(누리집) http://sub.ktr.or.kr/edu/ 1577-0091(교육안내 4번)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집합교육, 온라인교육(Zoom)
제4호	세스코 (세스코멤버스시티교육장)	(누리집) https://www. cescoacademy.co.kr 02-2140-0288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02 CHAPTER

영업신고

1. **영업신고**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통합민원상담 > 회원가입>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❶ 위생용품 수입업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❷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신청 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시행규칙 별표 9]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 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②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신고·변경신고 하려는 경우

만약, 허위로 수수료 면제대상을 신청한 경우 신청 민원은 즉시 반려처리됨



❸ 영업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①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③ 위생교육 수료증**(사전교육이 어렵다고 신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1)2)], 영업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❹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위생용품)'를 수입할 경우에도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 단순 소분 판매 등이 목적인 완제품 형태의 위생용품
(예) 벌크포장된 젓가락, 대용량 세척제 등

❺ 일괄결제 화면에서 조회된 민원의 목록 중 수수료를 납부할 민원을 체크한 후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납부 결제수단(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결제진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영업신고 반려 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됨

❻ 영업신고증 발급은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여부에 면허서 납부 버튼 나타나는 경우에는 면허세 납부대상이며, 별도로 납부하셔야 증명서 출력이가능합니다.
*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텍스를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❼ 영업 휴업·재개·폐업 **신청**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우리회사 안전관리 > 우리회사 민원 > 우리회사 전자민원신청을 통해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신청**하시고 휴업·재개·폐업 중 해당 민원을 선택하고 일자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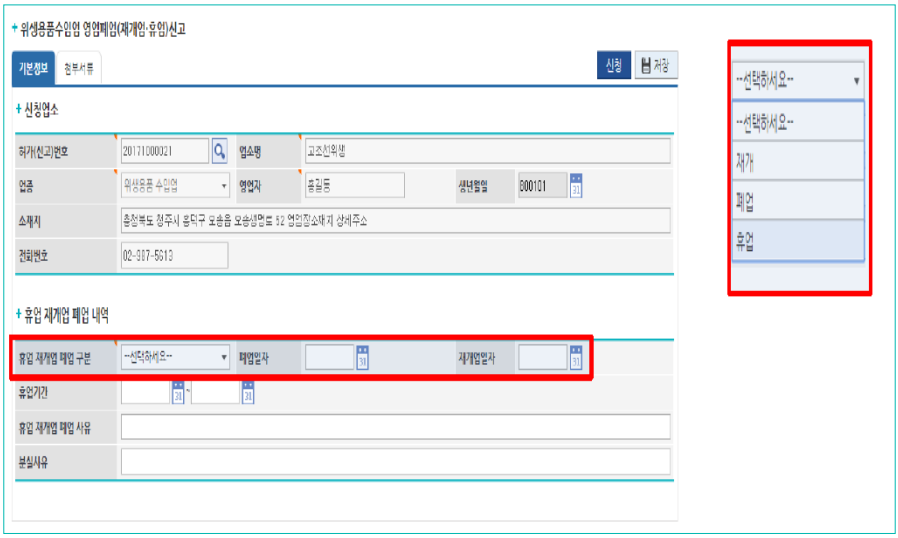

CHAPTER 03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1. 기존 국외제조업소 및 국외수출업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위생용품 제조·가공 등을 하는 시설은 국외제조업소에 해당되고,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업소에 해당됩니다.
   ** 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는 '등록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수입된 이력이 없는 국외제조(수출)업소는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신청 시 '해외제조업소 동의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❶ 기존 등록된 국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기존 등록된 국외제조업소의 명칭과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같은 경우에는 기등록된 국외 제조업소는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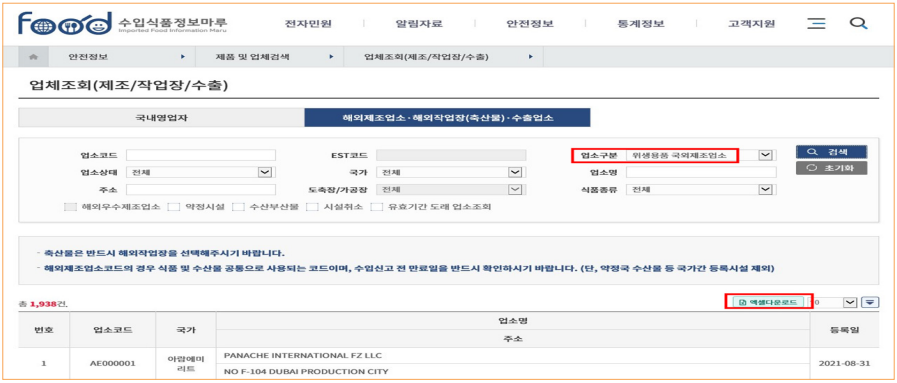

❷ **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를 신규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버튼 클릭합니다.

※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의 아이디로 로그인 시 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민원신청 불가능



❸ 약관동의 후 **다음(수입식품관련업체) 버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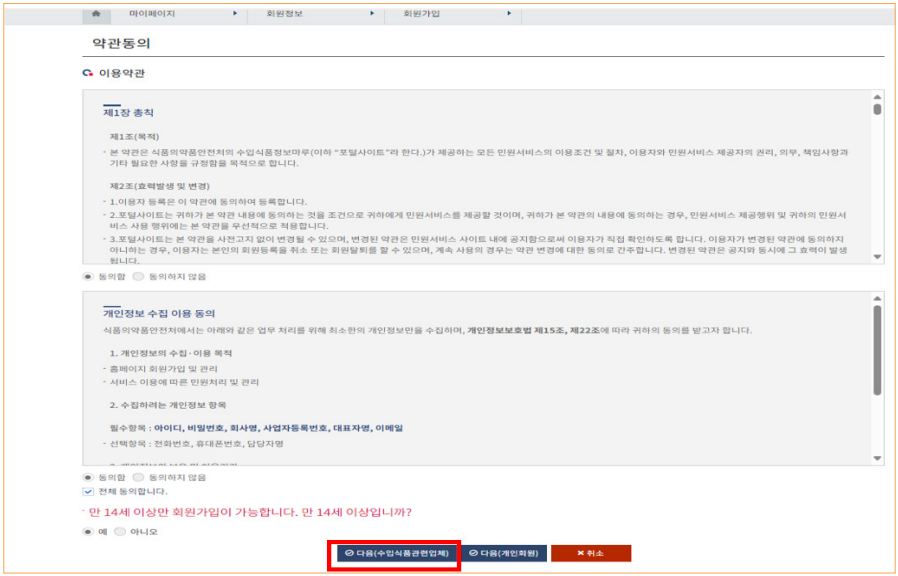

❹ **업체조회 버튼 클릭**하여 '업종구분'에서 '위생용품수입업'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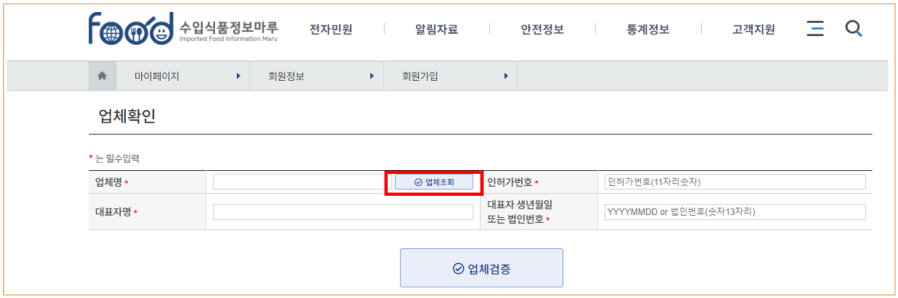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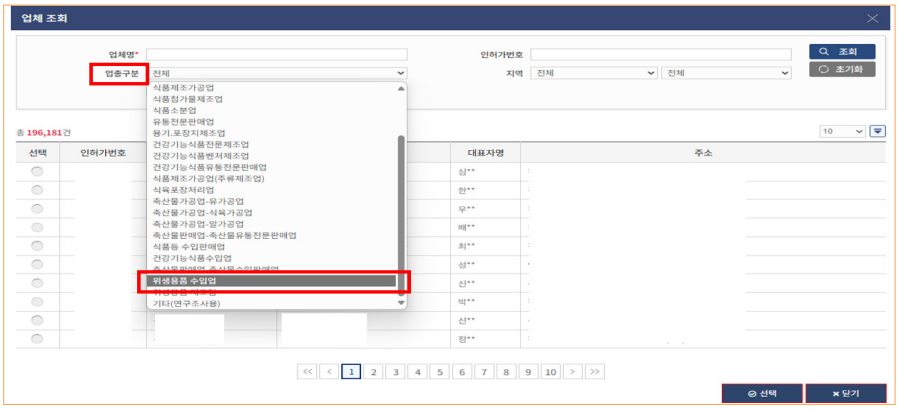

❺ **업체명 및 인허가번호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한 후 신청인의 **위생용품수입업체를 선택** (옵션단추) 후 회원가입(선택)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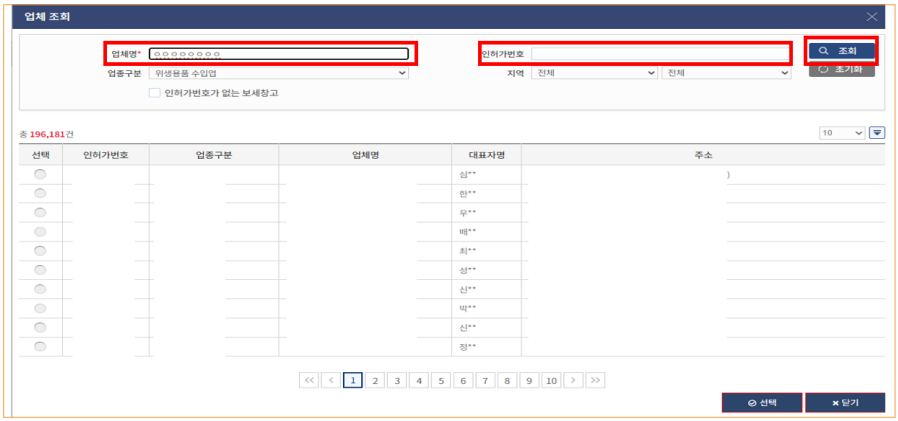

❻ **신규 국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수입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국외제조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해당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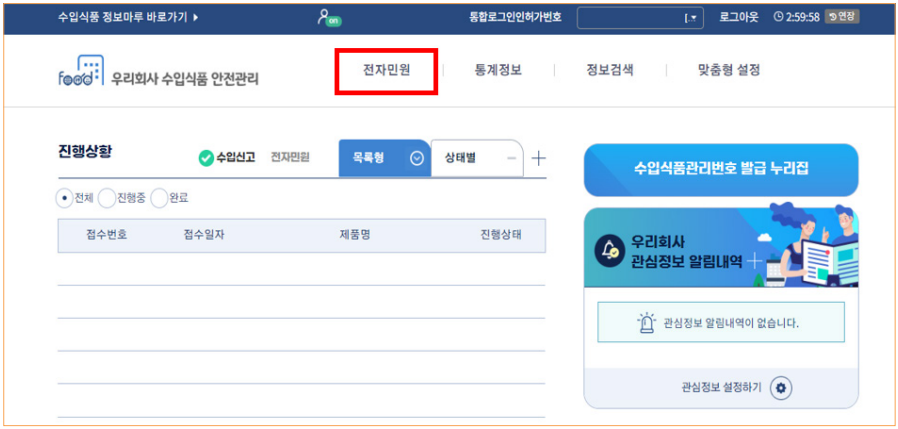

*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의 아이디로 로그인 필수



22	공통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재지정 신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45일	신청하기
23	공통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30일	신청하기
24	공통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30일	신청하기
25	공통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휴업·재개 신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1일	신청하기
26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국외수출업소 등록신청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	신청하기
27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국외수출업소 변경신청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	신청하기
28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	신청하기
29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변경신청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	신청하기
30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보완완료 회신	수입신고 기관	-	신청하기
31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자진취하	수입신고 기관	-	신청하기
32	위생용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수입신고 기관	-	신청하기

❼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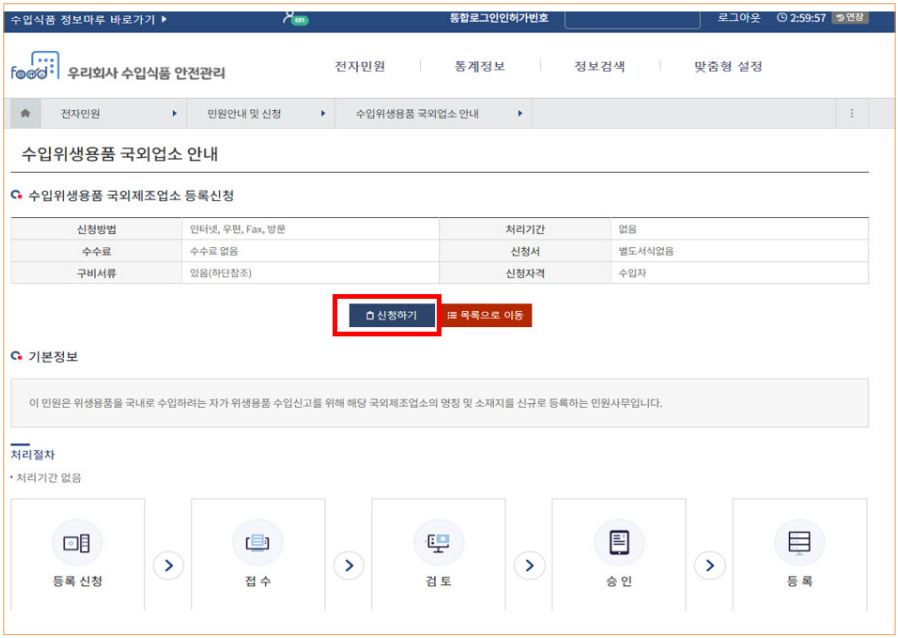

❽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 정보란의 **중복확인** 클릭합니다.



⑨ **위생용품제조업소명, 국가, 소재지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하여 **'중복 또는 유사업소가 없습니다.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신청을 진행해주세요.' 문구가 뜨면** 아래 지역 선택 후 소재지 옆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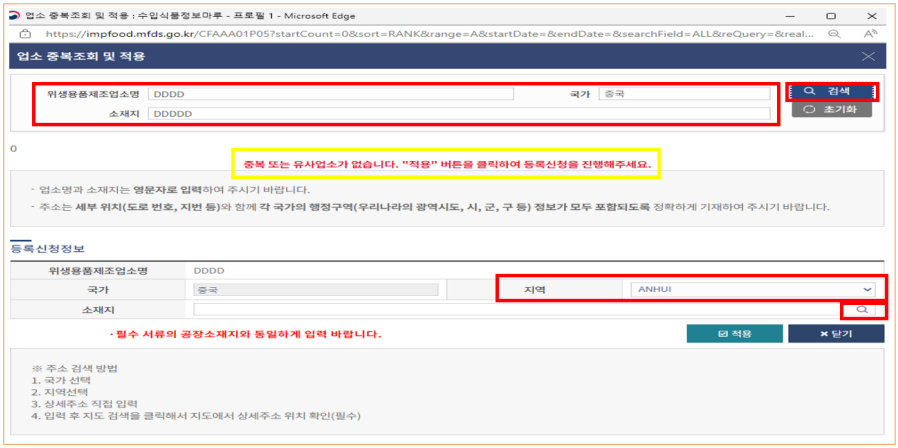

⑩ 지도 팝업창이 뜨면 **본인이 입력한 주소의 위치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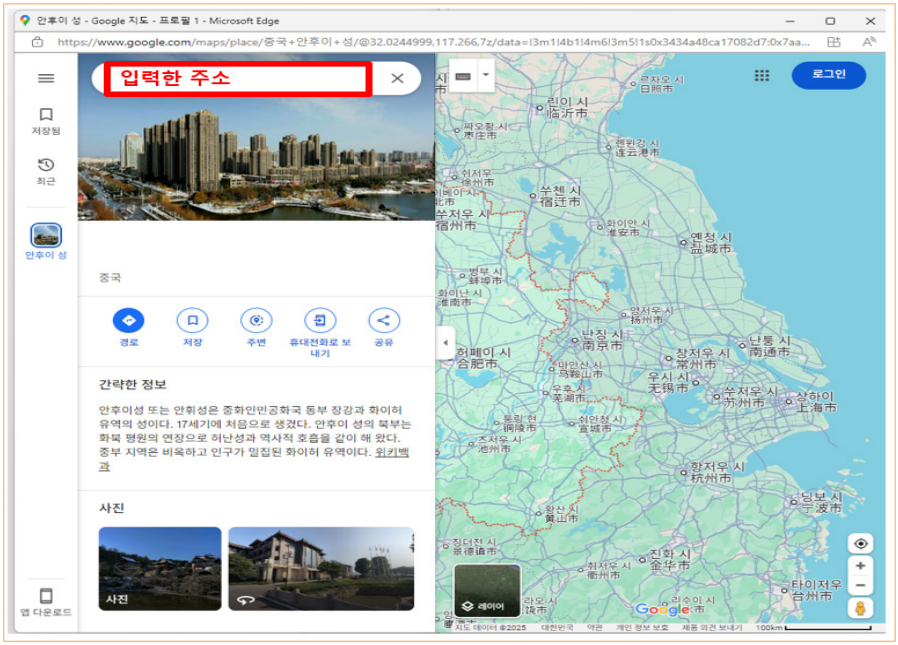

⓫ **국외제조업소의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⓬ **수출업소**는 A(국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하여 B(수출업소)에서 국내로 수출할 경우에 **증빙서류(선하증권(B/L), 송장(invoice))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어 수출업소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예시	**A에서 제조하여 A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 국외제조업소(A)만 신청
	A에서 제조하여 B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 국외제조업소(A) 및 수출업소(B) 신청

04 CHAPTER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 신청

1. 위생용품 종류 및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원료) 또는 재질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원료'라 함은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함
   **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하거나 원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2. 신규 성분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성분 신청 후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는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거 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민원인을 위한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안내서[3]'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체 자주하는 질문(FAQ) 제조·위생처리 수입 기타 참고자료

제목 성분 검색 10개씩 보기

Total: 16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	수입	민원인을 위한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안내	위생용품정책과	2024.12.19	83
15	수입	수입 위생용품 성분코드 현황(2024.09.27)기준	위생용품정책과	2024.09.27	130


민원인을 위한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안내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Ⅰ. 서론 ····· 1
Ⅱ. 적용범위 ····· 2
Ⅲ. 성분신청 ····· 3
1.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 현황 조름도 ····· 3
2. 성분 사용가능 여부 확인 ····· 4
가) 제조업자 성분 조회 ····· 4
나) 수입업자 성분 조회 ····· 10
3. 성분 사용신청(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 17
가) 제조업자 원재료코드 신청 ····· 17
나) 수입업자 성분신청 ····· 20
[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성분 정보 검색 방법] ····· 22
1. CAS 번호 및 영문명 확인 ····· 22
2. 한글명 확인 ····· 24
[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성분 정보 작성 방법] : 색소성분 ····· 28
1. C.I. 일반명(C.I. Generic Name) ····· 28
2. C.I. 번호(C.I. Constitution Number) ····· 28
3. 성분명 ····· 29
Ⅳ. 안전성 검토 및 확인 ····· 31
1.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31
2. 제출자료 확인 방법 ····· 32
3. 신규성분 사용신청 안 확인 검토사항 ····· 34
[참고 사이트] 성분의 영문명 및 CAS 번호 검색 ····· 38
[참고 사이트] 안전성 평가자료 검색 ····· 39

3)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안전관리 > 민원인을 위한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안내)에 게시

❶ 기존 성분 코드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규격 및 원료검색 > 성분코드 조회 > 구분 : 위생용품 선택> 성분명 입력'에서 조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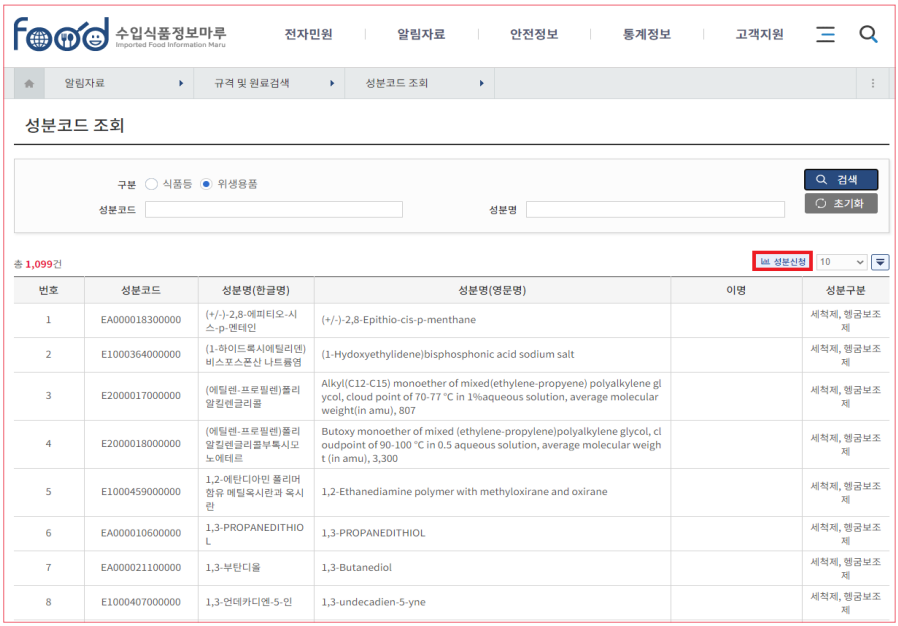

번호	성분코드	성분명(한글명)	성분명(영문명)	이명	성분구분
1	EA000018300000	(+/-)-2,8-에피티오-시스-p-멘테인	(+/-)-2,8-Epithio-cis-p-menthane		세척제, 헹굼보조제
2	E1000364000000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폰산 나트륨염	(1-Hydoxyethylidene)bisphosphonic acid sodium salt		세척제, 헹굼보조제
3	E2000017000000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Alkyl(C12-C15)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ene) 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70-77 °C in 1%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807		세척제, 헹굼보조제
4	E2000018000000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cloudpoint of 90-100 °C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3,300		세척제, 헹굼보조제
5	E1000459000000	1,2-에탄디아민 폴리머 함유 메틸옥시란과 옥시란	1,2-Ethanediamine polymer with methyloxirane and oxirane		세척제, 헹굼보조제
6	EA000010600000	1,3-PROPANEDITHIOL	1,3-PROPANEDITHIOL		세척제, 헹굼보조제
7	EA000021100000	1,3-부탄디올	1,3-Butanediol		세척제, 헹굼보조제
8	E1000407000000	1,3-언데카디엔-5-인	1,3-undecadien-5-yne		세척제, 헹굼보조제

❷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등은 **사용 가능한 성분(원료) 및 재질**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사용 가능한 성분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1〕〔별표2〕에 정한 성분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성분 * 기재되지 아니한 성분은 국외 사용 근거 서류 또는 관련 문헌 등을 제출 후 검토 ** 헹굼보조제의 경우「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2]에서 규정한 성분 중에 사용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성분이 있으니 수입신고 시 확인 필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재질 및 제조방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식품과 일부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 잉크성분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외함)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1.나.1).마)
구강관리용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나 식품 원료·성분으로 인정된 것만 사용 가능
기타 위생용품[4]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살균·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용 가능한 살균·보존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성분에 한하여 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이어야 함

❸ **문신용 염료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37개)과 색소(35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6]과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

< 문신용 염료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검출허용한도 (MG/KG)
1	2-아미노-6-에토실나프탈린	2-Amino-6-etho xynaphthaline	-
2	4-아미노-3-플루오로페놀	4-Amino-3 fluorophenol	-
3	4-아미노아조벤젠	4-Aminoazoben zene	-
4	o-아미노아조톨루엔	o-Aminoazotolu ene	-
5	벤지딘	Benzidine	-
6	바이페닐-4-일아민	Biphenyl-4-ylamine	-
7	p-클로로아닐린	p-Chloroaniline	-
8	4-클로로-o-톨루이딘	4-Chloro-o-tolui dine	-
9	3,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 benzidine	-
10	3,3'-디메톡시벤지딘	3,3'-Dimethoxy benzidine	-
11	3,3'-디메틸벤지딘	3,3'-Dimethyl benzidine	-
12	P-크레시딘	p-Cresidine	-
13	2,4-디아미노아니솔	2,4-Diaminoanisole	-
14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
15	4,4'-메틸렌다이아닐린	4,4'-Methylene dianiline	-
16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4,4'-Methylenebis(2-methylaniline)	-
17	톨루엔-2,4-디아민	Toluene-2,4-Diamine	-
18	1.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
19	5-나이트로-o-톨루딘	5-Nitro-o-toluidine	-
20	1,2-벤즈페난트렌	1,2-Benzphe nanthrene	-
2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Bis(2-ethylhexyl) phthalate	-
22	베릴륨	Beryllium(Be)	-
23	클로로포름	Chloroform	-
24	디부틸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
25	안트라센	Anthracene	-
26	o-아니시딘	o-Anisidine	-
27	니켈	Nickel(Ni)	5 이하
28	비소	Arsenic(As)	5 이하
29	카드뮴	Cadmium(Cd)	1 이하
30	수은	Mercury(Hg)	1 이하
31	납	Lead(Pb)	1 이하
32	6가크로뮴	Hexavalent Chromium(Cr6+)	-
33	염화비닐	Vinyl chloride	-
34	1,2-벤즈 안트라센	1,2-Benz anthracene	-
35	나프탈렌	Naphthalene	-
3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 ethylene	5 이하
3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 ethylene	5 이하

< 문신용 염료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

순번	색명 (Color Index)	색번호 (CI NUMBER)	순번	색명 (COLOR INDEX)	색번호 (CI NUMBER)
1	Acid Green 16	44025	19	Disperse Orange 37	-
2	Acid Red 26	16150	20	Disperse Red 1	11110
3	Acid Violet 17	42650	21	Disperse Red 17	11210
4	Acid Violet 49	42640	22	Disperse Yellow 3	11855
5	Acid Yellow 36	13065	23	Disperse Yellow 9	10375
6	Basic Blue 7	42595	24	Pigment Orange 5	12075
7	Basic Green 1	42040	25	Pigment Red 53	15585
8	Basic Red 1	45160	26	Pigment Violet 3	42535:2
9	Basic Red 9	42500	27	Pigment Violet 39	42555:2
10	Basic Violet 1	42535	28	Solvent Blue 35	61554
11	Basic Violet 10	45170	29	Solvent Orange 7	12140
12	Basic Violet 3	42555	30	Solvent Red 24	26105
13	Disperse Blue 1	64500	31	Solvent Red 49	45170:1
14	Disperse Blue 106	-	32	Solvent Violet 9	42555:1
15	Disperse Blue 124	-	33	Solvent Yellow 1	11000
16	Disperse Blue 3	61505	34	Solvent Yellow 2	11020
17	Disperse Blue 35	-	35	Solvent Yellow 3	11160
18	Disperse Orange 3	11005			

❹ 성분 조회 후 신고하고자 하는 성분이 없는 경우 **신규 성분코드**는 목록 상단에 **[성분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성분신청 정보(한글명, 영문명, 학명, INS번호, CAS번호 등) 작성하시고 필요한 첨부파일(국외 사용 근거 서류 또는 관련 문헌) 등록 후 [성분신청]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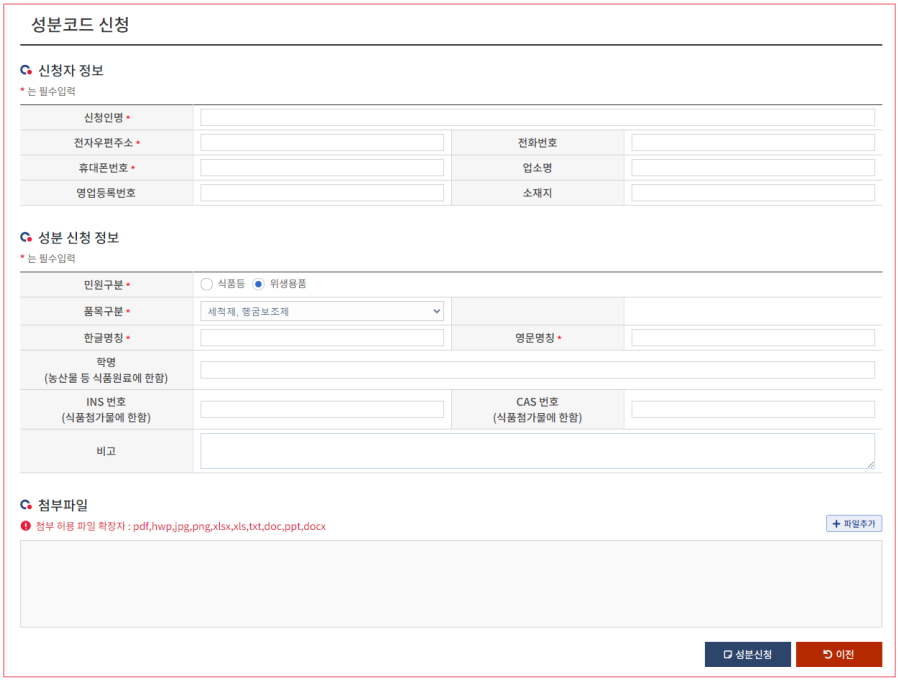

❺ 성분 등록신청 진행현황은 **'수입식품정보마루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현황 > 전자민원 진행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내역 중 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 클릭하시면 됩니다.

※ 성분 등록 승인 처리된 경우 처리상태는 '처리완료', 반려한 경우 처리상태는 '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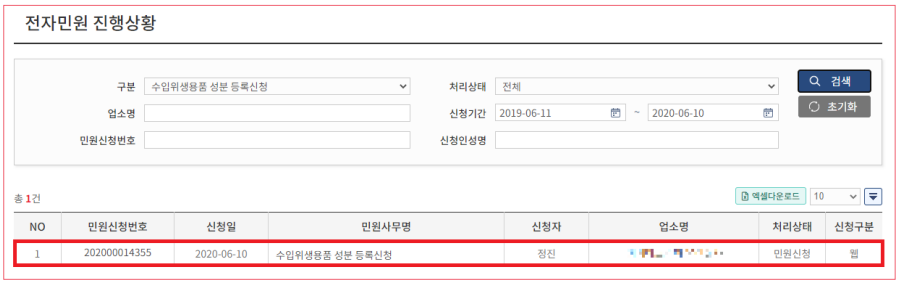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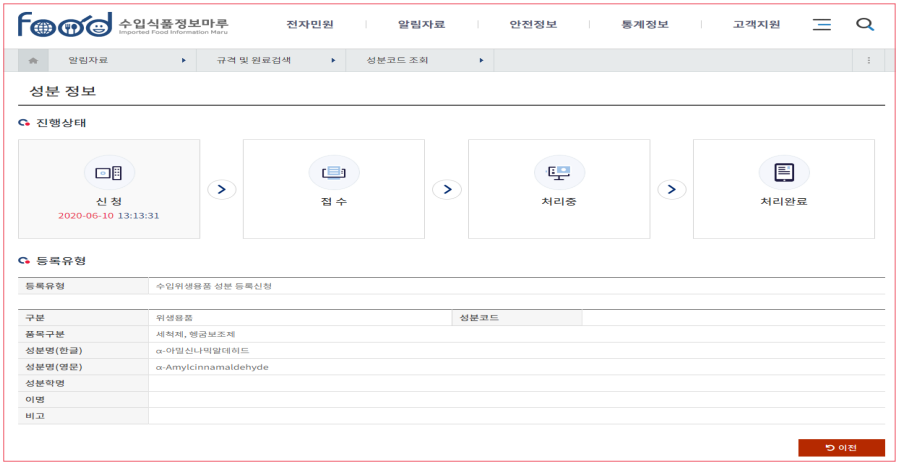

CHAPTER 05

수입신고서 작성

관세청 통관단일창구(https://unipass.customs.go.kr)로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담당 지방식약청으로 전자 신고됩니다.

❶ 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 회원가입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에서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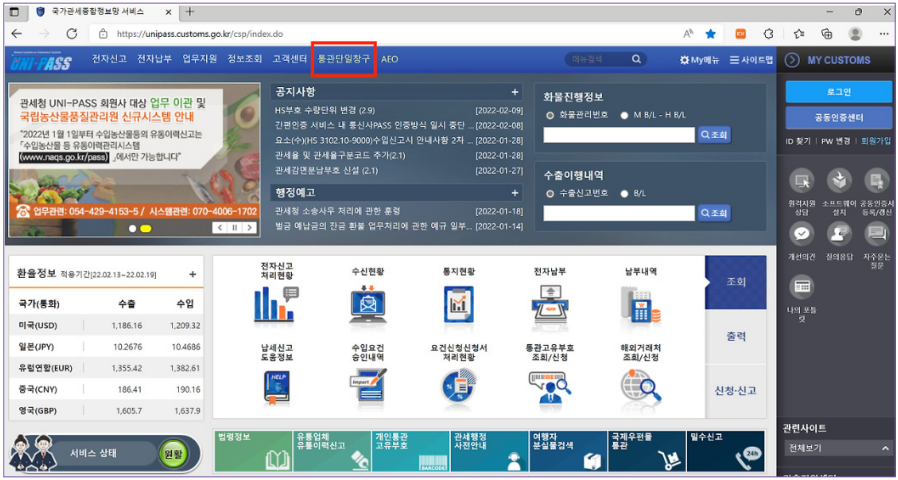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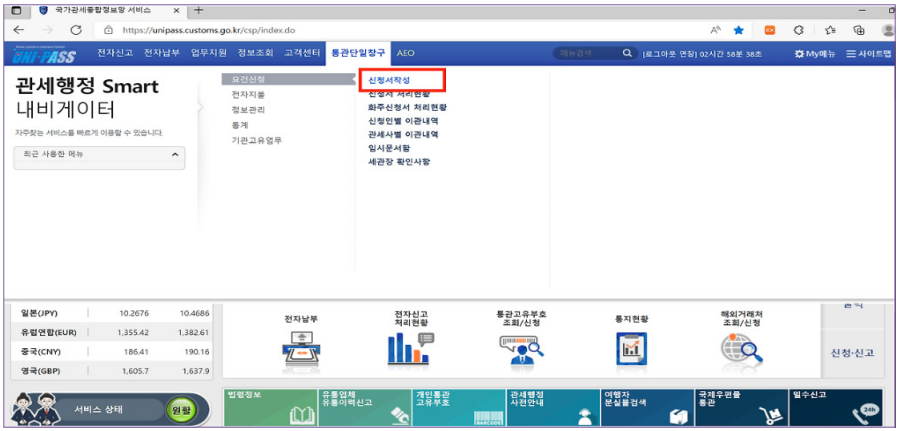

5-1 CHAPTER 수입신고서 작성_공통사항

신청인, 수입화주, 제조자, 용도, 보세창고 등 공통사항을 신고합니다.

❶ 초기화면에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전송구분, 신청문서'** 구분은 자동 입력됩니다.



❷ **기본사항**을 신고합니다.



필수 기재	사용 가능한 성분
신고구분(시기)	• 본 신고(입항 후 신고) • 사전신고(입항 5일 이전 신고)
품목구분	• [세척제, 헹굼보조제](성분) •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재질)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성분) •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냅킨,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성분) • [구강관리용품: 칫솔, 치간칫솔, 설태제거기](재질) • [구강관리용품: 치실](성분) • [문신용 염료](성분)
신고기관	• 신고기관에 따라 관할 보관창고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

❸ **신청인(수입화주)** 또는 **수입신고 대행자(관세사)** 등 실제 신청하는 사람의 정확한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 향후 검사 진행사항을 SMS로 통보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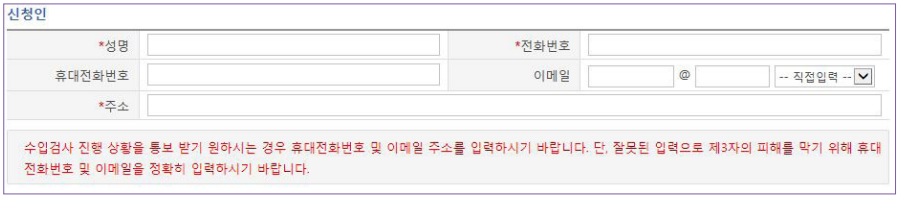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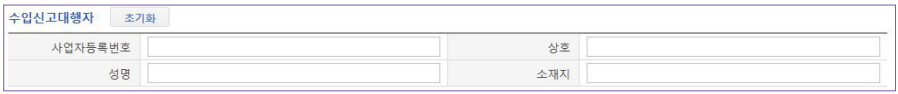

※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대행자 정보 입력하고 대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함

❹ **수입신고인**(영업등록업주, 수입화주)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위생용품 수입업' 정보조회 및 입력(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필수기재하며, **제3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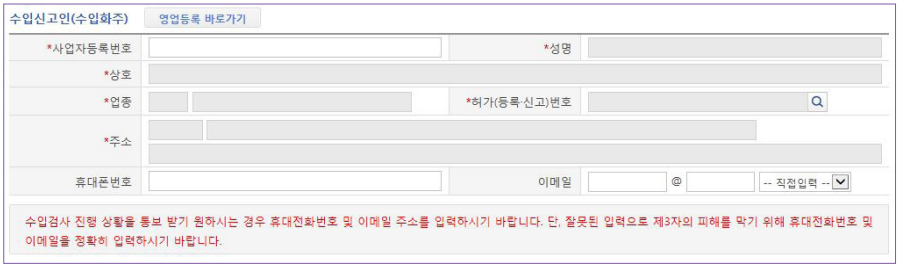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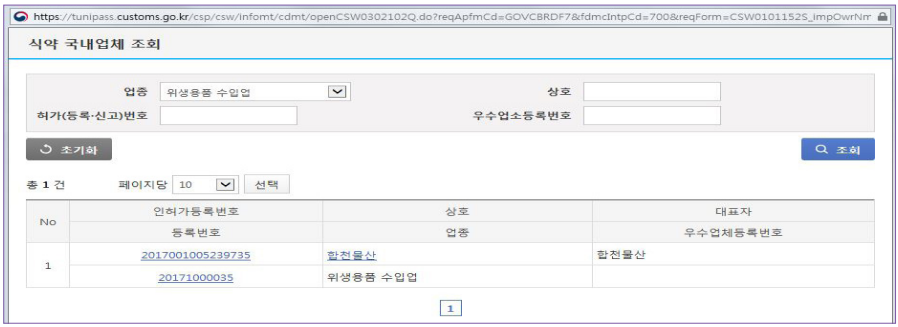

※ **수입화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등록 신청

❺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를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를 입력합니다.

※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에서 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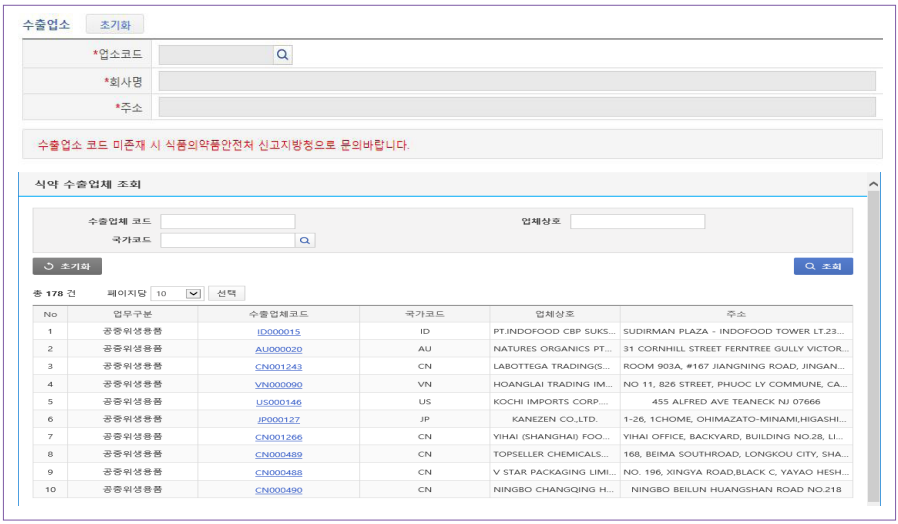

❻ **검사(반입)장소**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반드시 보관창고 소관 기관과 신고기관이 일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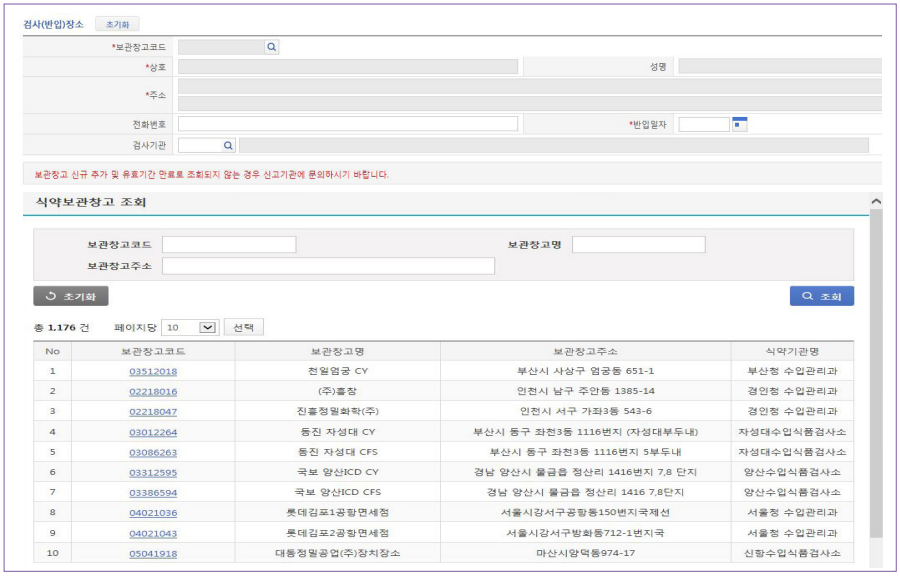

※ 보관창고 신규 추가 및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기관에 문의

❼ 용도가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용'**인 경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자(위생용품 제조업)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필수기재).

※ '위생용품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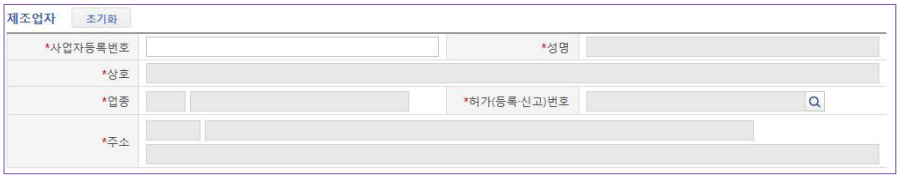

❽ **신고일반**에서 판매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용, 연구·조사용, 반송품 중 해당되는 용도를 선택합니다(필수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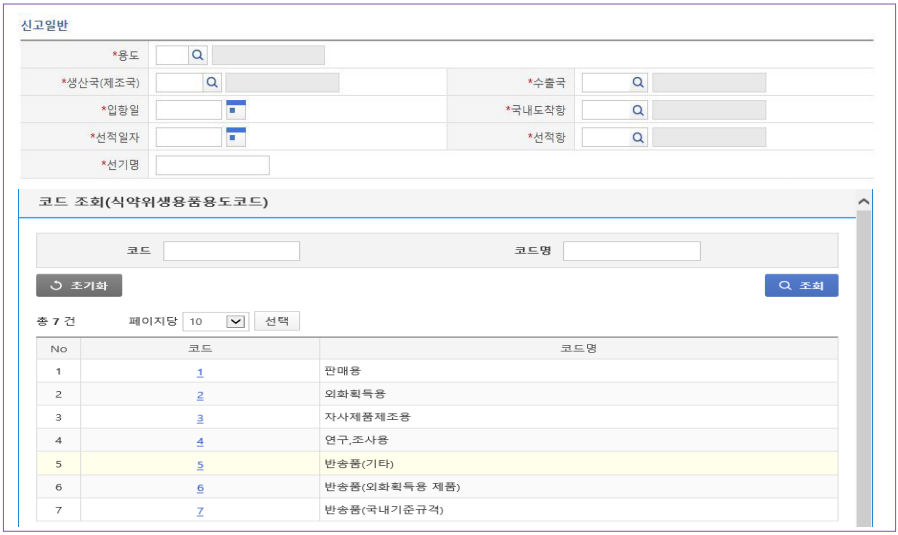

용도	제출서류
판매용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외화 획득용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사본(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힌 서류)
자사제품 제조용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사본(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 자사제품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소의 명칭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된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연구·조사용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연구조사 수량, 연구조사 후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반송품	• 반송사유서 • 수출상대국의 부적합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 처리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 • 재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재가공(포장)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생용품 제조업소명, 제조가공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를 포함하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

※ 통관단계에서 위 제출자료 외에도 통관제품 관련 사실 여부 파악 등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예 : 제조사 성분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❾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입항일, 국내 도착항, 선적일자, 선기명 입력을 입력합니다(필수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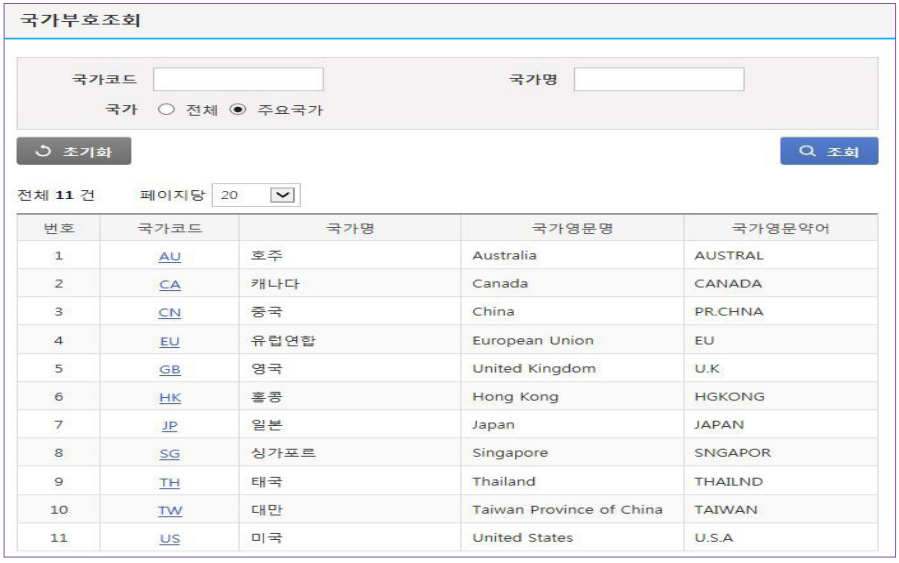

국가부호조회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 ○ 전체 ◉ 주요국가

초기화 　　조회

전체 11 건 　페이지당 20

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영문명	국가영문약어
1	AU	호주	Australia	AUSTRAL
2	CA	캐나다	Canada	CANADA
3	CN	중국	China	PR.CHNA
4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5	GB	영국	United Kingdom	U.K
6	HK	홍콩	Hong Kong	HGKONG
7	JP	일본	Japan	JAPAN
8	SG	싱가포르	Singapore	SNGAPOR
9	TH	태국	Thailand	THAILND
10	TW	대만	Taiwan Province of China	TAIWAN
11	US	미국	United States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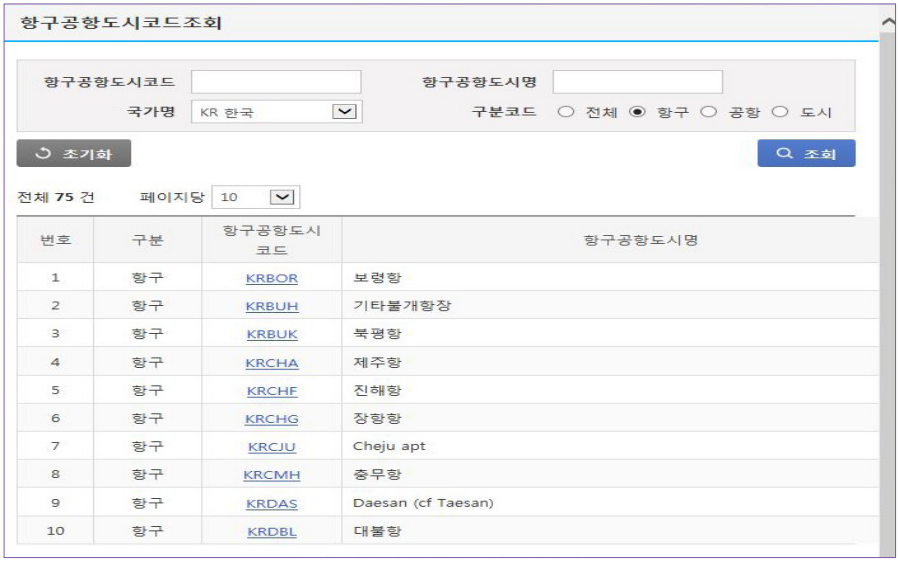

항구공항도시코드조회

항구공항도시코드 　　항구공항도시명

국가명 KR 한국 　　구분코드 ○ 전체 ◉ 항구 ○ 공항 ○ 도시

초기화 　　조회

전체 75 건 　페이지당 10

번호	구분	항구공항도시코드	항구공항도시명
1	항구	KRBOR	보령항
2	항구	KRBUH	기타불개항장
3	항구	KRBUK	북평항
4	항구	KRCHA	제주항
5	항구	KRCHF	진해항
6	항구	KRCHG	장항항
7	항구	KRCJU	Cheju apt
8	항구	KRCMH	충무항
9	항구	KRDAS	Daesan (cf Taesan)
10	항구	KRDBL	대불항

5-2 CHAPTER 수입신고서 작성_품목사항

1. **위생용품의 제조일자별로 수량, 중량,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수입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3페이지에 품목(항수)을 추가합니다.
   -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가장 빠른 품목이 대표 품목**입니다.

2. 같은 배 또는 비행기로 같은 입항일에 수입한 같은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❶ **신고품목공통정보**에 아래 사항을 입력합니다.

- **(수동입력)** 제품유형(품목코드), 세번부호, B/L번호, 한글표시사항

  ※ 제품유형(품목코드)선택시 하단 유형 및 해당 재질을 정확하게 선택

- **(자동입력)** 총항수, 총수량(단위는 수동입력), 총순중량, 총과세가격

  ※ 한글표시사항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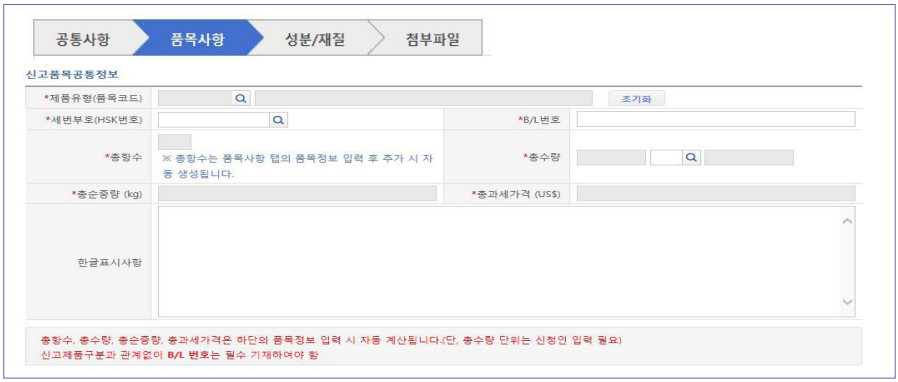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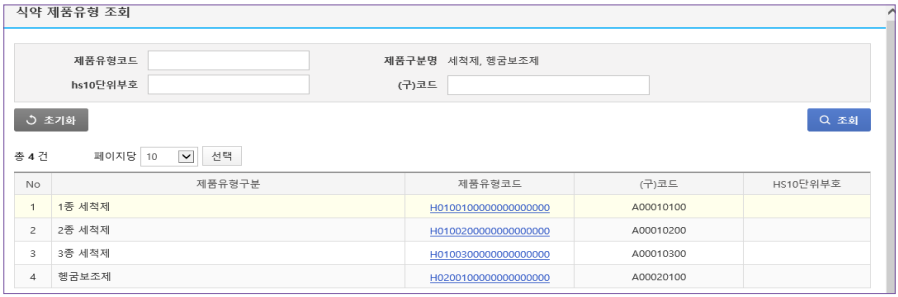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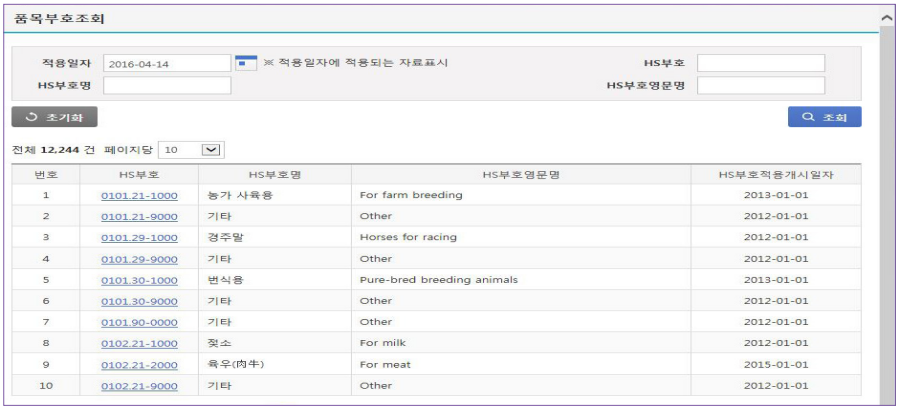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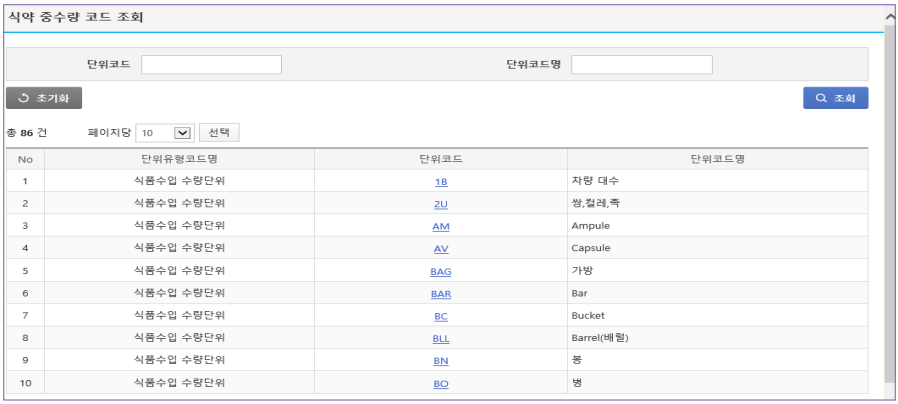

※ 총항수, 총수량, 총순중량, 과세가격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나 수량단위는 필수 기재하여야 함

❷ 품목정보에 아래 사항을 입력하며, 품목(항수)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으며, 여러 개를 추가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품목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대표품목은 유통기한(제조일자)이 가장 빠른 품목임

- **(수동입력)** 제품명(영문명), 한글명, 대표 품목 여부, 수량, 순중량, 과세가격, 화물관리번호
- **(자동입력)** 품목식별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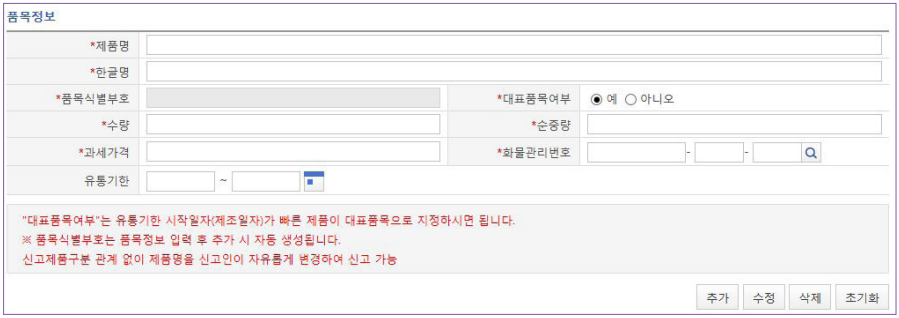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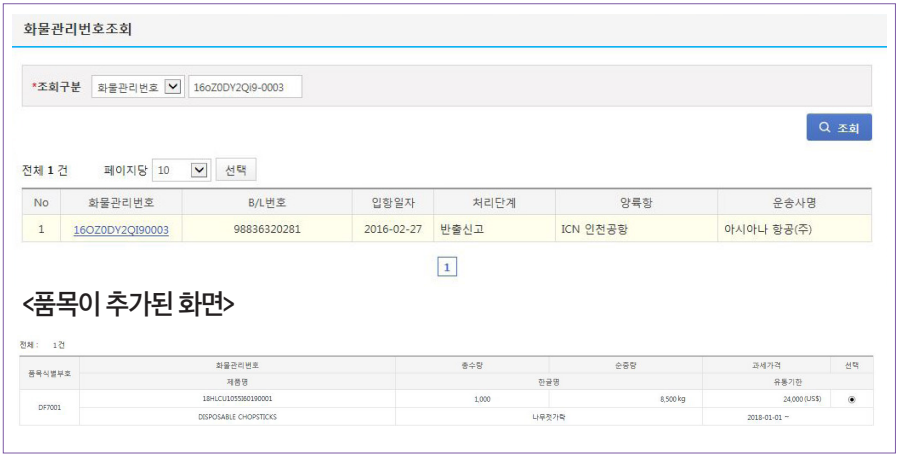

<품목이 추가된 화면>

❸ 아래 품목군은 **성분**을 입력합니다(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성분 배합비율을 필수 입력).

- 세척제, 헹굼보조제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일회용행주, 타월, 종이냅킨,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 구강관리용품(치실), 문신용 염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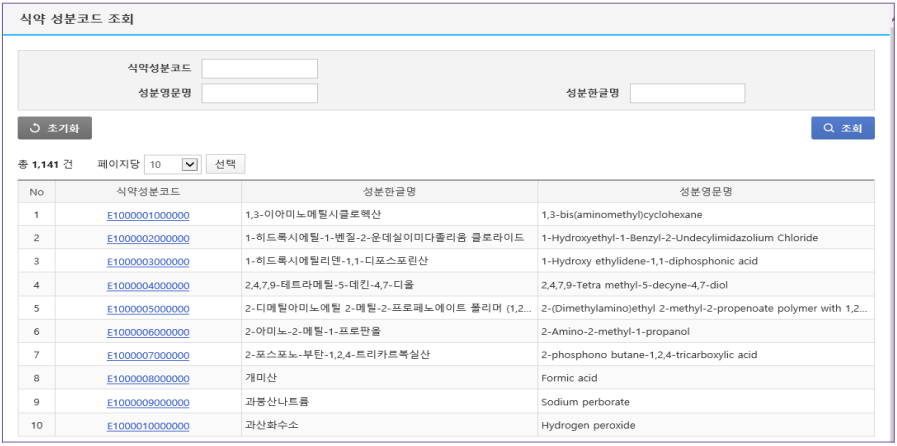

<성분 및 배합비율이 추가된 화면>



<혼합성분이 추가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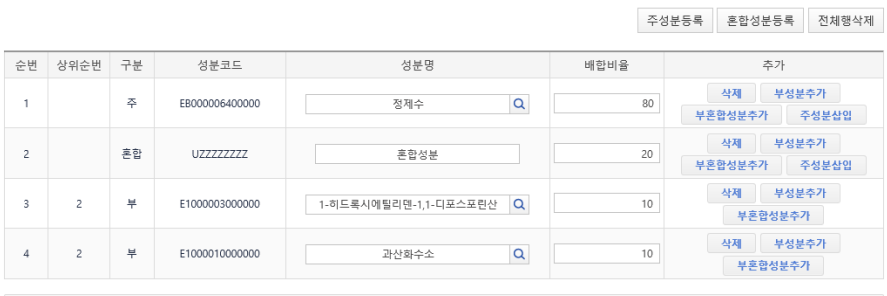

* 혼합성분은 하나의 성분이 다른 여러 개의 성분 또는 세트로 제품이 구성된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코드로 자동(UZZZZZZZZ)으로 부여됨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코드는 E1(세척제), EA(식품첨가물), EB(식품원료)로 시작되는 코드이며 헹굼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코드는 E2(헹굼보조제), EA(식품첨가물), EB(식품원료)로 시작되는 코드입니다.

성분코드	성분코드 설명	적용가능 범위	비고
E100000000	세척제	세척제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별표1]
E200000000	헹굼보조제	헹굼보조제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별표2]에서 규정한 사용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E300000000	세척제, 헹굼보조제 외 기타 위생용품	세척제, 헹굼보조제 외 기타 위생용품 품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사용 가능한 살균·보존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성분에 한하여 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이어야함
EA00000000	식품첨가물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EA00000000	식품원료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성분

성분코드	성분코드 설명	적용가능 범위	비고
E400000000	구강관리용품	구강관리용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나 식품 성분
E500000000	문신용염료	문신용염료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성분(제한성분)의 사용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건에 한해 사용 가능

※ 원료명 수입신고 방법

그간 색소(색상), 로션, 합지용 풀에 대해 원료명이 아닌 '일반총칭명'을 허용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색소(색상), 로션, 합지용 풀은 **최초정밀, 5년주기 정밀검사 대상** 수입물품은 사용된 **원료명을 구체적**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단, 로션 상위함량 3순위까지만 표시가능하며,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의 방수층 및 고정에 사용된 색소는 일반총칭명으로 수입신고 가능).

예시

기존	색소(적색)	로션	합지용풀
변경	색소(적색 227호)	로션(글리세린, 라우릴베타인, 시어버터)	합지용풀(초산비닐수지)

❹ 아래 품목군은 **재질**을 입력합니다.

-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인 경우

  ※ 친환경 소재 일회용 빨대(예: 풀빨대)는 '천연재질(재질코드 D9000001000000)'로 입력

- 구강관리용품 중 칫솔, 치간칫솔, 설태제거기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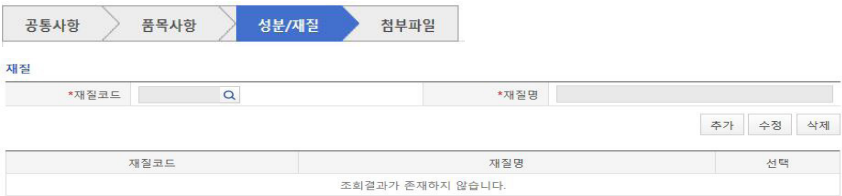

식약재질코드 조회

재질코드 재질한글명 재질영문명

초기화 조회

총 120 건 페이지당 10 선택

No	재질코드	재질한글명	재질영문명
1		금속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도장)	Metals(Polyethyleneterephthalate Coating)
2		금속제(폴리염화비닐도장)	Metals(Polyvinylchloride Coating)
3		금속제(폴리우레탄도장)	Metals(Polyurethane Coating)
4		금속제(폴리프로필렌도장)	Metals(Polypropylene coating)
5		금속제(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도장)	Metals(Hydroxybutyl polyester Coating)
6		나무제	Wood
7		대나무제	Bamboo
8		착색유리제(납함유크리스탈)	
9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10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1 2 3 4 5 6 7 8 9 10 ▶ ▶▶

<재질이 추가된 화면>

재질

*재질코드 *재질명

추가 수정 삭제

재질코드	재질명	선택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재질은 품목구분이 "기타 위생용품(일회용컵,숟가락,젓가락 등 재질류)"일 경우만 입력 가능함

5-3 CHAPTER 수입신고서 작성_첨부파일

수입위생용품의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십니다.

❶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전면(주표시면, 정보표시면)과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등을 첨부합니다.

※ 확장자가 pdf, pptx, ppt, hwp, xls, xlsx, doc, docx, png, jpg, bmp, gif, tif, zip인 파일만 첨부 가능 **(첨부파일은 한 개만 등록, 3MB까지 등록가능,**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 또는 문서파일에 저장하여 제출)

※ 6번 항목의 실물사진의 경우 제품에 따라 최대 3개를 등록해야함(주표시면, 정보표시면, 기타 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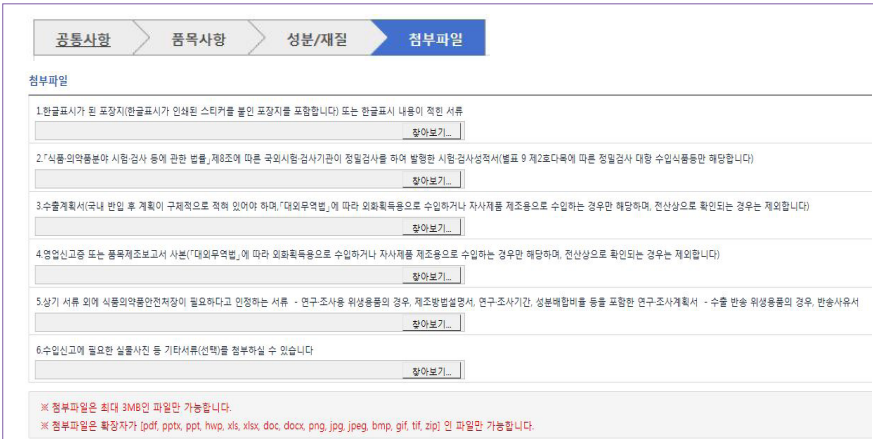

❷ 기타 필요한 서류(제조회사 재질 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사진제출 면제대상 : 자사제품의 원료용·연구조사용·외화획득용

붙임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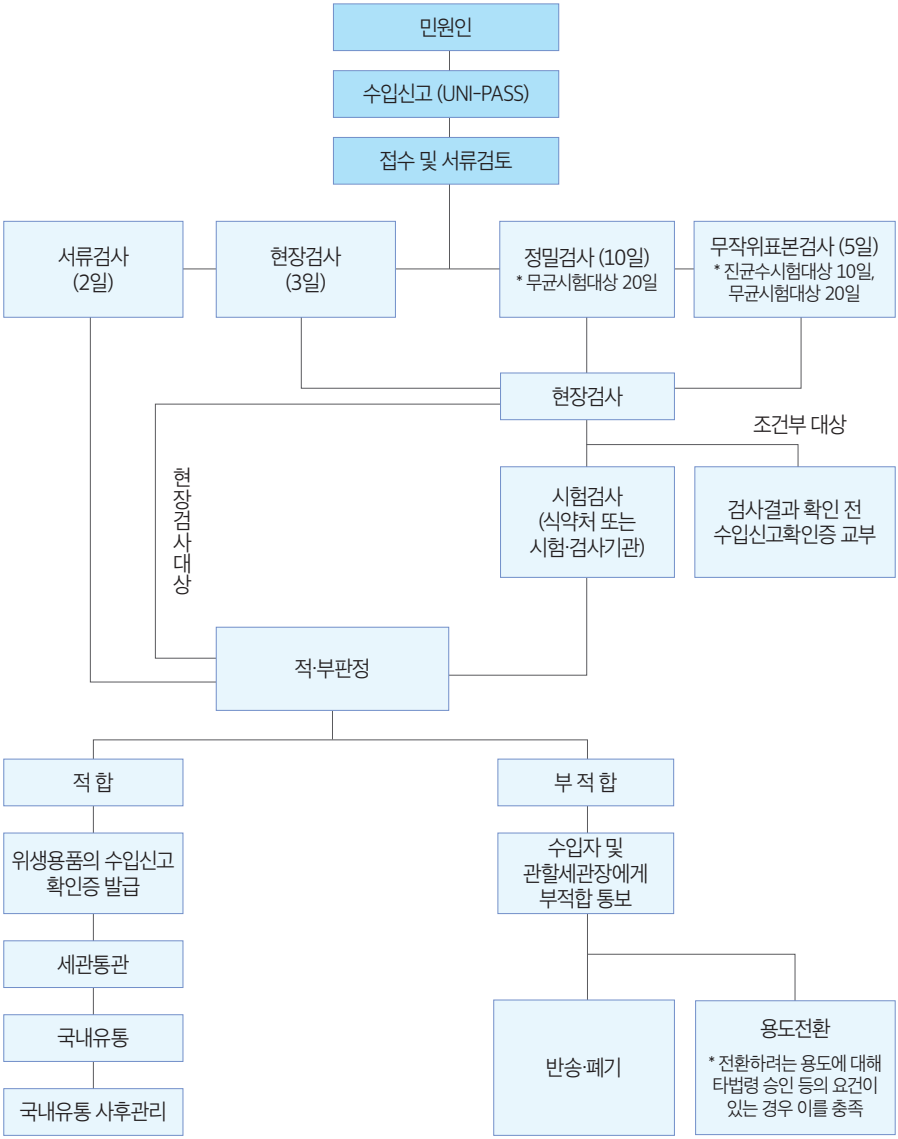

※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 공직자 부패·공익 신고안내 】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 신고” 코너

식품의약품안전처